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0· 2· 28 조례 제1575호

제1조(「이천시 포상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외 부분 중 “각 호외 1에”를 “각 호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순화양양”을 “순화”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통·리개발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통·리개발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통리”를 “총괄”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“사계”를 “해당분야”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학·사계”를 “학계, 토목·건축 등 관련분야”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6조(「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양양하고”를 “드높이고”로 한다.

제7조(「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1항 중 “폭원”을 “너비”로 한다.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

제8조(「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“쌍태아”를 “쌍둥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